

제179회 영등포구의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복지·사람 중심 새 영등포 

2013년 주요업무 보고



자동차관리과

보고 순서

I . 일 반 현 황	••• 1
II . 2013 주요업무 실적	••• 3
III . 2014 주요업무 계획	•••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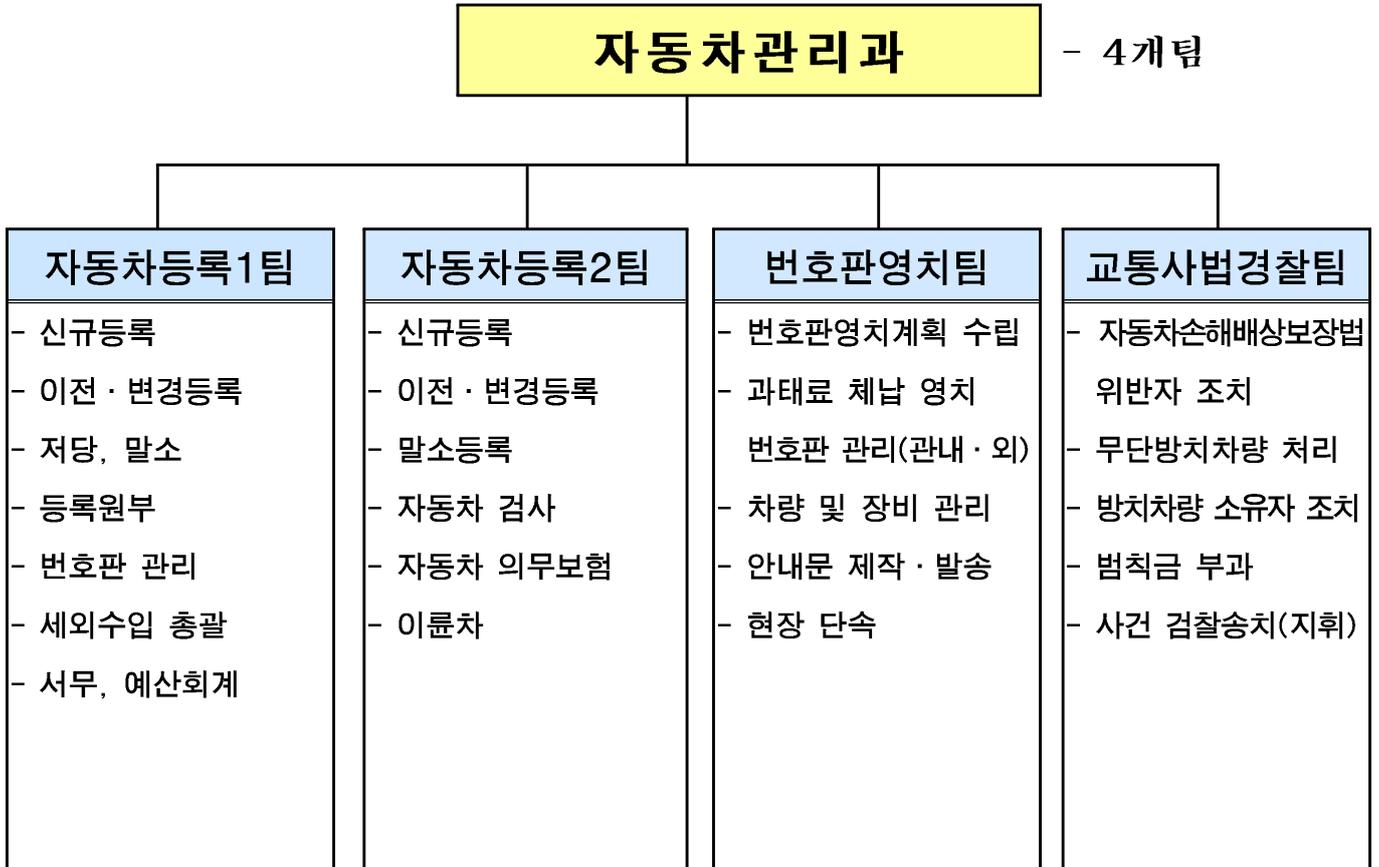
I. 일반 현황

1

조직

자동차관리과

- 4개팀



2

인력

구분	계	일반직						기능직				별정·계약직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6급	7급	8급	9급	6급	7급	8급	9급
정원	23		1	4	6	6	3		1	2					
현원	24		1	5	6	4	4		4						
과부족	1			1		△2	1		3	△2					

3

자동차등록 및 장비현황

자동차 등록 현황

2013.10.31 기준

계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154,931	107,066	7,044	22,802	556	17,463

자동차 등록 관련 장비 현황

계	인증기	복사기	프린터(칼라)	팩스	스캔	컴퓨터	봉합기
49	4	3	10(1)	2	1	28	1

단속 장비 현황

계	차량	차량번호판독기	차량 네비게이션
4	2	1	1

4

예산 집행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집 행 액		이 월 예상액	예상잔액
		집행액 (10.31기준)	집행예정액 (12.31까지)		
계	339,095	221,889	58,055	0	59,151
과태료체납징수 활동강화	132,128	66,458	15,978	0	49,692
기본경비	206,967	155,431	42,077	0	9,459

II . 2013 주요업무 실적

연 번	사 업 명	쪽
-----	-------	---

- ① 신속하고 친절한 자동차 등록 서비스4
- ② 과태료 징수를 통한 세외수입 증대5
- ③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차량 조치6

전국 어디에서든 자동차등록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신규·이전 및 변경에 관한 등록업무를 신속하고 친절하게 처리하여 신뢰 받는 행정과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사업개요

- 통합민원창구 운영
 - 신규·이전·변경등록 및 저당·말소, 이륜자동차 창구 통합 운영
 - 자동차 취득관련 지방세 업무 지원을 위한 창구 운영
 - 자동차등록 및 지방세 업무 동시처리 민원불편 최소화
- 상속 이전등록 안내 및 과태료 부과 사전 안내
 - 사망자 소유의 미상속 자동차에 대한 상속 안내문 발송
 - 이전 및 각종 등록 신청 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전 안내
- 인터넷 창구 운영
 - 전자민원 「민원24」 를 통한 등록증 재발급 및 등록원부 발급
 -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www.ecar.go.kr)을 통한 등록업무
 - 서울전자민원 상담(자동차등록 전반에 관한 민원상담)

□ 추진실적

(단위 : 대)

계	신규등록	변경등록	이전등록	말소	압류 및 저당	등록증 발급등	이륜차
482,491	6,121	20,068	30,452	7,327	159,956	253,319	5,248

□ 소요예산 : 비예산

자동차관리법 위반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세입목표를 달성하고 구 세입 증대에 기여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자동차관리법 위반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사전 안내, 수시부과 및 독촉고지
- 과태료 체납자 채권확보(압류)를 통한 징수율 제고 및 세입목표 달성
- 고액 및 상급체납자 특별관리(영치 등)를 통한 징수율 제고

□ 추진실적

- 과태료 부과 징수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부 과	징 수	체 납	징수율(%)
합 계	1,604,412	399,058	1,205,354	24.87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123,912	86,526	37,386	69.83
자동차검사 위반 과태료	475,714	140,130	335,584	29.46
자동차관리법 위반 범칙금	30,290	26,940	3,350	88.94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974,496	145,462	829,034	14.93

- 자동차번호관 영치 실적 (단위 : 건)

영치건수	번호관 보관건수	번호관 반환건수	체납과태료 징수실적(천원)		
			총계	영등포구	타구
361	114	257	177,759	83,479	94,280

□ 소요예산 : 66,458천원

□ 향후계획

- 고액체납자 특별관리(재산조회를 통한 재산압류 및 징수독려 강화)
- 과태료 체납자 자동차 번호관 집중 영치 실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운행의 금지)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여 무보험운행을 예방하고 사고 시 피해자를 보호함으로써 자동차 운전자의 준법정신 고취 및 건전한 자동차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함.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 보유자
- 추진절차
 - 사건접수 → 출석요구 → 신문조사 → 범칙금부과, 이첩, 검찰송치

□ 추진실적

(단위 : 대)

접 수			송 처 업 무					타기관 이 첩	수납	진행중
계	과년도 이 월	현년도 접 수	소계	기소	기소 중지	협의 없음	공소권 없 음			
2,070	1,362	708	296	61	178	42	15	542	83건/ 2,780만원	1,149

□ 소요예산 : 비예산

□ 향후계획

-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위반자(누적분) 중 공소시효 도래자 우선 처리
 - 2009년 이전 발생 미처리건(2014년 공소시효 만료) : 66대
- 불출석자에 대한 현장 확인 및 소재수사 강화로 사건의 신속한 처리

Ⅲ . 2014 주요업무 계획

연 번	사 업 명	쪽
①	신속하고 친절한 자동차 등록 서비스	8
②	과태료 체납자 번호판 영치	9
③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자 처리	10

적법한 자동차 관리를 통하여 교통문화 정착 및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준법정신을 고취시켜 선진 자동차 문화를 구현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 1 ~ 12.31
- 사업내용
 - 자동차 신규·이전·변경·말소 등록
 - 자동차 저당권 설정 등록·말소
 - 자동차 등록원부 발급 및 열람
 - 자동차 압류등록 및 해제
 - 자동차 번호판 부착 및 봉인
 - 자동차 검사, 의무보험 및 상속이전 지연 과태료 부과

□ 추진방향

- 친절하고 신속한 자동차 등록민원 서비스 제공
- one-stop 민원처리로 민원불편 해소
- 각종 신고서식 및 신고처리 방법 등 홈페이지 게재 민원편의 제공

□ 추진계획

-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민원처리 통합 창구 운영
- 자동차 검사, 의무보험 가입 및 상속 이전등록 사전안내
- 불법 명의 자동차 자진신고 접수창구 운영
 - 대상 : 차량이 본인 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제 타인이 운행하여 과태료 미납, 세금체납, 압류 등으로 불편을 겪는 자
 - 신청자격 : 차량소유자 본인 또는 대리인(위임장 지참)

□ 예산액 : 비예산

자동차관련 과태료 상습 체납자의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통해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 징수율을 제고하는 한편 의무보험 미가입 및 검사 미필 차량의 운행을 제한함으로써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 1 ~ 12.31
- 사업대상
 - 2011. 7. 6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 이후 발생 과태료 체납자
 - 세목별 체납액 30만원 이상, 체납 발생일로부터 60일 경과한 경우
- 추진근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 추진방향

- 영치대상 차량 안내문 발송으로 민원 사전 예방
-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의 질서위반행위 근절
- 과태료 상습 체납자 중점 관리 과태료 징수율 제고

□ 추진계획

- 번호판 영치 대상 차량 선정을 통한 사전 안내문 발송
 - 번호판 영치 10일 전 사전 안내문 발송
- 3인 1개조 편성 현장 단속을 통한 체납 차량 운행 제한
- 영치 차량의 번호판 관리 및 과태료 징수
 - 과태료 체납액 완납시 번호판 반납
 - 의무보험 가입 여부 및 검사 필 여부 확인 후 번호판 반납

□ 예산액 : 55,318천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운행의 금지)를 위반한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위반자와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를 위반한 무단방치 차량 소유자를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하여 건전한 교통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 1 ~ 12.31
- 사업대상
 -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 보유자 처벌
 - 자동차를 무단 방치한 차량 소유자 또는 점유자 처벌

□ 추진방향

-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위반자에 대한 엄정한 법규 적용으로 건전한 교통문화 조성
- 무단방치차량 소유자에 대한 철저한 법규 이행으로 준법정신 고취
- 자동차관련 법규 위반자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업무로 행정의 신뢰감 고취

□ 추진계획

-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위반자(누적분) 중 공소시효 도래자 우선 처리
 - 2010년 이전 발생 미처리건(2015년 공소시효 만료) : 220대
-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제한 강화로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으로부터 발생하는 피해자 보호
- 방치차량 신고 접수 즉시 차량 소유자 확인 자진 처리 유도
- 불출석자에 대한 현장 확인 및 소재수사 강화로 사건의 신속한 처리

□ 예산액 : 14,328천원